

일본국 헌법 제9조를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법학관 헌법연구소장 이토 마코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자위권에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 해석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이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실력으로써 저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 제9조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각의(閣議)결정에서 자위권 발동요건을 기존에 해석되어 온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오랜 헌법 해석이 밀실에서의 여당 협의, 그리고 국무회의 결정만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명백한 위험'의 유무는 그 당시의 정권이 이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역대 내각 법제국 장관과 헌법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국무대신이나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존중옹호의무(제99조)가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규율을 받는 기관이 임의로 어떠한 해석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뿐만 아니라 법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통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일본의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키고 국력을 낮추며 국익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격(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의하여 일본도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반격(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논의입니다.

반격(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미군과의 군사 일체화 하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다름없고, 상대국 입장에서는 위협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적의 기지를 선제공격한다고 해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서로의 증오의 사슬이 시작됩니다. 상대가 대규모 반격에 나서면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고, 그 폭력의 연쇄 방아쇠를 일본이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여 핵 공유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격(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거나 핵 공유를 하는 것은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증강이나 공격의 구실을 제공할 뿐입니다. 아시아에서 점점 고립되어, 안전 보장에 가장 필요한 주변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없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으로 헌법 제9조로는 국가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잔혹하고 끔찍하며 슬플 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무력 사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쟁이라는 수단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지력이라는 이름 하에 반격(적기지 공격) 능력을 높여 상대에게 '위협을 준다'는 것과, 전수방위에 철저하여 일본으로부터 공격하는 일은 없다는 '안심을 공여한다'는 것, 어느 쪽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할지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또는 금지한다는 방침을 유지하여 왔는데, 2014년 7월 아베 정권은 각의 결정을 통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 조문을 헌법상의 개정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헌법개정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개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부의 해석에 따라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해석개헌이라고 합니다. 아베 정부는 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개헌을 한 것인데, 정부의 헌법 해석의 변경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헌법 개정 절차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의 판단만으로 헌법의 규범 내용이 변경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집단적자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규정을 살펴보면,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0조 제2항에서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제73조에서 대통령에게 '선전포고와 강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제89조 제2호에서 '선전·강화'를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전쟁 및 국군의 해외파견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 전쟁 및 국군의 해외파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침략전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여 다른 나라의 전쟁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력행사는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 수행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J.S.)